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9. 8 선고 2016가단130865(본소), 2017가단115641(반소) 판결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 구상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 1. A

2. B

피고(반소원고) C

피고 D

변론 종결 2017. 7. 21.

판결 선고 2017. 9. 8.

주 문

1. 이 사건 반소 중 병원비, 간병비 구상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피고(반소원고)는 각 별지 기재 제1부동산 중 24,157,674/428,830,000 지분, 각 별지 기재 제2부동산 중 3,044,285/54,040,000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D는 각 별지 기재 제1부동산 중 37,693,063/428,830,000 지분, 각 별지 기재 제2부동산 중 4,749,978/54,040,000 지분에 관하여
각 2016. 8. 2.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반소피고)들의 각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 가운데 2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80%는 피고(반소원고)와 피고 D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차례로 '제1, 2부동산'이라 한다) 중 피고(반소원고)(이하 편의상 '피고 C'이라고 한다)은 각 10,000분의 604지분, 피고 D는 각 1,000분의 94 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들은 각자 20,6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전제사실

가. 제1, 2부동산 소유자인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9. 26.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들과 피고 C이 있으며, 피고 D는 피고 C의 처이다.

나. E는 생전인 2014. 6. 23. 피고들 부부에게 피고들이 주택 일부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30,000,000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제1, 2부동산을 증여하고 같은 달 24. 피고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각 1/2 지분)를 마쳤다.

다. 망인의 사망 당시 시가는 제1부동산 428,830,000원, 제2부동산 54,040,000원이었고, 상속재산은 망인 명의의 35,000,000원 상당의 예금채권(상속인들 사이의 합의가 없어 출금이 불가능)이 남아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

○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 (A×B)-(C+D)

- A=적극적 상속재산+증여액-상속채무액
- B=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 C=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수유액
- D=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상속채무 부담액

(2)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가) 산정기초의 확정

● 피고들은 원고 A이 망인으로부터 최소 198,000,000원을 수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 공동상속인 아닌 피고 D의 경우에는 증여 당시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하였음은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유류분 산정에 필요한 증여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며, ● 망인의 예금채권은 특정 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상태이고, 유류분반환청구는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른 기여분 결정과 무관하므로(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고들의 증여재산, 즉 수증액은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1)

를

공제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104090(본소), 2012다104106(반소) 판결 취지 참조], 위 보증금반환채무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피고별로 15,000,000원씩 공제한다.

(나) 구체적 유류분 부족액 계산

원고별로 아래 산정기초를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면 각 69,645,000원(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A×B)-(C+D)] = [487,870,000원×(1/6)]-(0원 +11,666,666원)이 된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487,870,000원=35,000,000원+452,870,000원-0원 • 적극적 상속재산인 망인 명의의 예금채권 35,000,000원 • 피고들 순 수증액 452,870,000원[=482,870,000원(= 제1부동산 시가 428,830,000원+제2부동산 시가 54,040,000원) -인수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액 30,000,000원) • 상속채무액 0원
원고들	유류분의 비율(B)각 1/6=(법정상속분 1/3)×(1/2)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각 0원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각 11,666,667원 = 상속으로 얻은 재산[=예금채권 35,000,000원×(법정상속분 1/3)] -상속채무액 0원
	원고별 유류분 부족액 = A×B-(C+D)=487,870,000원×(1/6)-(0원+11,666,667원)

(3) 반환의 방법 및 범위 (가) 산정방식

○ 반환의무자별 유류분 반환비율 산정방식

= 공동상속인(1로 표시)과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2로 표시)의 반환비율

- 공동상속인의 유류분 초과액=공동상속인의 수증액-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의 비율= $C1-A \times B1$

- 공동상속인 유류분 반환비율 =공동상속인의 유류분 초과액/(공동상속인의 유류분

초과액+제3자의 수증액) = $(C1-A \times B1)/[(C1-A \times B1)+C2]$

- 제3자의 유류분 반환비율 =제3자의 수증액/(공동상속인의 유류분 초과액+제3자의 수증액)

= $C2/[(C1-A \times B1)+C2]$

○ 반환의무자의 유류분권자별 반환액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부족액×반환의무자별 유류분 반환비율

○ 특정 수증재산별 유류분 반환 분담액

=반환의무자의 유류분권자별 반환액×(특정 수증 부동산 시가/전체 수증 부동산 시가)

○ 특정 수증재산별 원물반환 지분

= 특정 수증재산별 유류분 반환 분담액/특정 수증 부동산 시가(일부 공유지분만 수증한 경우에도 전체 부동산 시가임)

(나) 구체적 원물 반환의 범위

피고들이 각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을 원인으로 반환하여야 부동산 지분을 계산하면, 피고 C은

제1부동산 중 24,157,674/428,830,000 지분, 제2부동산 중 3,044,285/54,040,000 지분, 피고 D는 제1부동산 중 37,693,063/428,830,000 지분, 제2부동산 중 4,749,978/54,040,000 지분이 된다(구체적 계산과정은 아래 표 참조).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제1, 2부동산 중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6. 8. 2.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	유류분 초과액 145,123,333원 = $(452,870,000원 \times \text{공유지분 } 1/2) - 487,870,000원 \times (\text{유류분 비율 } 1/6)$ • 유류분 반환비율 = $145,123,333원 / 371,558,333원 = 145,123,333원 / (145,123,333원 + 226,435,000원)$ • 각 원고에 대한 반환액 = 각 27,201,959원 = 유류분 부족액 69,645,000원 $\times$ 반환비율 $145,123,333원 / 371,558,333원$ • 각 원고에 대한 수증재산별 유류분 반환 분담액 • 제1부동산 중 수증지분 분담액: $24,157,674원 = 27,201,959원 \times [\text{제1부동산 시가 } 428,830,000원 \times (1/2) / \text{제1, 2부동산 시가 합계 } 482,870,000원 \times (1/2)]$ • 제2부동산 중 수증지분 분담액: $3,044,285원 = 27,201,959원 \times [\text{제2부동산 시가 } 54,040,000원 \times (1/2) / \text{제1, 2부동산 시가 합계 } 482,870,000원 \times (1/2)]$ • 각 원고에 대한 수증재산별 원물반환 지분 • 제1부동산 중 반환지분: 제1부동산 중 유류분 반환 분담액 24,157,674원 / 제1부동산 시가 428,830,000원 • 제2부동산 반환지분: 제1부동산 유류분 반환 분담액 3,044,285원 / 제2부동산 시가 54,040,000원
피고 D	수증액 = 226,435,000원 = $452,870,000원 \times \text{공유지분 } 1/2$ • 반환비율 = $226,435,000원 / 371,558,333원$ • 각 원고에 대한 반환액 = 각 42,443,041원 = 유류분 부족액 69,645,000원 $\times$ 반환비율 $226,435,000원 / 371,558,333원$ • 각 원고에 대한 수증재산별 유류분 반환 분담액 • 제1부동산 수증지분 분담액: $37,693,063원 = 42,443,041원 \times [\text{1부동산가액 } 428,830,000원 \times (1/2) / \text{제1, 2부동산가액 합계 } 482,870,000원 \times (1/2)]$ • 제2부동산 수증지분 분담액: $4,749,978원 = 42,443,041원 \times [\text{제2부동산가액 } 54,040,000원 \times (1/2) / \text{제1, 2부동산가액 합계 } 482,870,000원 \times (1/2)]$ • 각 원고에 대한 수증재산별 유류분 반환 분담액 • 제1부동산 중 반환지분: 수증지분 유류분 반환 분담액 37,693,063원 / 제1부동산 시가 428,830,000원 • 제2부동산 중 반환지분: 수증지분 유류분 반환 분담액 4,749,978원 / 제2부동산 시가 54,040,000원

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들이 망인 생전에 망인계좌에서 무단 인출하여 횡령한 30,900,000원 중 원고들 상속분에 해당하는 20,600,000원 [= 30,900,000원 $\times$ (1 - 피고 C의 법정상속분 1/3)]의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은 망인 계좌 인출금을 망인 병원비, 간병비 등 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을 4, 5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망인 계좌에서 30,900,000원을 무단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취지 참조),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의 주장

피고 C은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부담할 비용 합계 27,891,076원 [(병원비, 간병비 26,553,576원 - 망인 계좌 인출금으로 충당한 금액 12,460,000원) + 장례비용 13,797,500원]은 피고 C이 단독 지출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법정상속분에 상응하여 각 9,297,025원 [= 27,891,076원 $\times$ (1/3)]을 구상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병원비, 간병비 구상 부분(= 14,093,576원×각 1/3)은 주장자체로 공동부양의무자인 피고 C이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과거의 지출 부양료를 구상하는 것으로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2호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여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2) 다음으로 장례비 구상 부분(= 13,797,500원×각 1/3)에 관하여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계좌 인출금이나 장례 부의금으로는 부족하여 피고 C의 고유재산으로 장례비를 지출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C의 이 사건 반소 중 중 병원비, 간병비 구상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들의 각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와 나머지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재경

별지

1) 피고들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월세로 전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상속개시 당시의 수증재산가액에서 물가변동을 고려한 임대차보증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문제되나(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취지 참조), 구체적 반환시기를 밝히지 않고 있고, 증여시점과 상속개시시점 사이의 간격이 크지 않으므로 상속개시 당시의 수증재산가액에서 임대차보증금액을 그대로 공제하였다.